

사전감사대상

문서 기번호	자용 5511 - 473			감사
처리기한	19	보통기간		
기안	1991. 7.	영구	이 사 부총재 총 재	
발신	19	영구		
조사역	과 장	부 부 장	부 장	
이 목 장 장 (인) 7/27 (인) 7/27				
기안자	김 남 영	합의 (법규과)기핵부장	전결단기	각무권한 분류로 제 1 장 호
소 속	금융가책과			제 1 절 제 1 항 제 1 호
직 위	행원 전화 4465	참조		
수 신				
참 조				
제 목	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			
금융기관의 사채보증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상환사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				
붙임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 1부. 끝.				
접수 91.7.29 검수 91.7.29 발착일				

한 국 은 행

852

26

(결제서식)

개정(안)

정	비 고
과 같음)	
과 같음)	
	o 사채보증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상환사채 범위확대
	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
	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같음)	
같음)	
적	o 시행일자 명시
명한다.	
발 송	
업무연락 기 구	
1. 필요	
타 자	

(붙임)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

현	명	개	정	비	고
제1조 ~ 제5조	(생 략)	제1조 ~ 제5조	(현행과 같음)		
제6조(사채보증 및 연수)		제6조(사채보증 및 연수)			
① ~ ③	(생 략)	① ~ ③	(현행과 같음)		
④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사채보증증액은 보증사채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기업 순재산의 2배 범위내로 하되 자본금 및 준비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정부의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취급액은 사채보증 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		④ 금융기관의 다만, 「주택건설촉진법」에 의거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취급액은 사채보증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		o 사채보증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상환사채 범위확대	
⑤ ~ ⑥	(생 략)	⑤ ~ ⑥	(현행과 같음)		
제6조의2 ~ 제9조	(생 략)	제6조의2 ~ 제9조	(현행과 같음)		
	(신 설)		부 칙		o 시행일자 명시
			이 세칙은 1991. 8. 1 부터 시행한다.		